발표자료집

대한민국 공간정책의 새로운 시작

공간민주주의

「공간민주주의 헌장(안)」 제안 국회토론회

2026. 8. 27(목)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 한준호 국회의원 | 염태영 국회의원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residential Commission on Architecture Policy 도시연대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인천연대 마을

후원 세종특별자치시, 은평구청, 강서구청, 강북구청, 수원특례시·고양특례시·부천시,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로운문화를실천하는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한국도시설계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조경학회

행사 일정

시간	내 용
10:00-10:30	**개회 및 참석자 소개 / 국민의례** **개회사** **박주민** 의원 I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한준호** 의원 I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염태영** 의원 I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축 사** **정창수** 구청장 I 강북구청 **김미경** 구청장 I 은평구청 **민경선** 시장 I 고양특례시 **진교훈** 구청장 I 강서구청 **이재준** 시장 I 수원특례시 **조용익** 시장 I 부천시 **환영사** **김진애** 위원장 I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기념 촬영**
10:30-10:35	**공간민주주의 헌장(안) 영상 상영**
10:35 -11:55	**주제발표 및 종합 토론** (좌 장) **김진애** I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 (발표자) **안상욱** I 도시연대 이사장 **하장호** I 문화연대 정책위원장 **홍경구** I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 단국대학교 교수 (토론자) **안상욱** I 도시연대 이사장 **하장호** I 문화연대 정책위원장 **홍경구** I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 단국대학교 교수 **최은영** I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11:55-	**폐 회**

Contents

공간민주주의 헌장(안) 01

공간민주주의 헌장(안) 설명자료 11

주제 발표 01

공간민주주의 헌장 제정을 위한 기초 논의 31

하장호 | 문화연대 정책위원장

주제 발표 02

공간민주주의 헌장 실행 전략 43

안상욱 | 도시연대 이사장

주제 발표 03

공간민주주의 12대 실천 의제 57

홍경구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공간민주주의 헌장(안)

걷고 싶고, 머물고 싶고, 가슴 뛰는 공간

"그것이 공간민주주의다."

공간민주주의 헌장(안)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residential Commission on Architecture Policy

공간민주주의 헌장(안)

— 걷고 싶고, 머물고 싶고, 가슴 뛰는 **공간**[1]을 향한 선언 —

전 문

'빛의 혁명'으로 일컬어지는 K-민주주의, 형평과 공정을 지향하는 경제민주화에 이어 이제 우리는 일상의 공간에서 민주주의를 몸으로 익히고 실천하는 공간민주주의를 통해 진정한 문화강국으로 나아가고자 한다.

우리는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관계를 맺으며, 민주주의를 경험한다. 걷고 싶은 골목, 머물고 감동받는 일상의 공간, 가슴 뛰는 광장은 살아 숨 쉬는 삶의 무대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공간은 권력과 자본의 독점, 공간 양극화와 단절, 획일적 개발, 과시적 랜드마크 경쟁, 지역소멸과 기후위기 속에서 시민[2]의 삶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다.

공간은 단순한 부동산이나 개발의 대상이 아니다. 공간은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고 만들어가는 공동의 자산이며, 내 것이자 우리 것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살아 있는 장이어야 한다. 우리는 공간 안에서 개인과 공동체, 과거와 미래,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공간 질서를 만들어 나가야만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국가는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참여와 열린 숙의를 바탕으로 공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여야 한다. 이에 공간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의지와 책임을 담아 우리 지역의 현재와 미래 세대를 향한 다음의 원칙, 극복과제 그리고 실천 의제를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

1) '공간'이란 삶의 그릇이 되는 도시·건축·공간환경·조경·자연생태를 포괄하는 것으로, 시민이 매일 경험하는 아파트 복도, 골목, 광장, 공원, 수변공간까지를 포함한다.

2) '시민'은 도시민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 '이주민·외국인' 등 이 땅 위에서 실제 살아가는 '거주민' 모두를 지칭한다.

3대 기본 원칙 – 방향성

공간민주주의는 다음의 세 가지 큰 방향 위에 선다.



원칙 1. 시민의 권리와 참여

공간의 주체는 시민이다. 모든 시민은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의 정책과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개인공간·공유공간·공공공간 모두에서 공동체 의식과 책임을 함께 키워 나간다.



원칙 2. 다원성과 포용성

공간은 수많은 사람간의 차이를 존중하고 다채로움을 향유하는 장이다. 지역 고유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시민의 창발적 의견이 살아나도록 조성되어야 하며, 다양한 삶과 문화가 공존하는 포용적인 환경을 지향한다.



원칙 3. 지속가능성과 지역성

공간은 미래세대와 함께 사용하는 자산이다.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의 삶과 공동체가 지속가능하게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또한 지역소멸에 대응하여 정주 여건과 생활 기반을 강화한다.

6대 극복 과제 - 문제 인식과 치유

우리 시대의 공간이 안고 있는 여섯가지 문제로 인한 아픔과 그 치유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문제 1. 권력 독점에 따른 공간 주체성 약화

시민 거버넌스를 통해 공간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주체의식을 높이고, 공간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한다.

문제 2. 양극화에 따른 공동체 단절과 공간 분절

단절된 공간 구조를 개선하여 사람과 사람, 공간과 일상이 연결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체적 관계를 회복한다.

문제 3. 획일화에 따른 다양성과 지역성의 상실

획일적 개발을 넘어 지역의 정체성과 기억을 되살리고, 지역 특성과 다양한 삶의 방식이 반영된 공간을 만든다.

문제 4. 과시적 랜드마크 개발에 따른 일상의 감동 상실

상징성과 규모를 앞세운 개발 경쟁을 넘어 시민이 걷고 머물며 일상의 즐거움과 감동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문제 5. 개발 압력에 따른 시공간 단절과 공간 자산 훼손

지역 공간자산의 무분별한 철거와 개발을 넘어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역사성과 지속성을 보존하고 계승한다.

문제 6. 지역소멸에 따른 지속가능성 위기

정주 여건과 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모든 세대와 계층 그리고 소수자에게 열린 지속가능한 공간을 만든다.

12대 실천 의제

공간민주주의는 추상적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삶과 도시 그리고 공간문화를 변화시키는 실천원칙이다. 주택, 골목, 공원, 광장 등 시민이 매일 살아가는 공간에서 지금 바로 실천되어야 한다.

제1조 (공간주권) 공간은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시민 모두의 것이며, 시민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 간다.

공간은 특정 권력이나 자본의 소유물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공동 자산이다. 모든 공간 정책과 개발 사업은 시민 참여와 공개된 절차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시민이 공간 형성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

제2조 (관계성) 공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보이지 않는 선을 잇는다.

공간은 사람과 사람, 행위와 환경을 연결하여 관계를 만들어가는 기반이다. 단절된 공간을 회복하고 공동체적 소통과 관계가 살아나는 열린 구조를 지향한다.

제3조 (사적 공간의 사회적 책임) 심지어 사적 공간도 사회적 소통 체계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사적 공간 또한 공동체와 관계 속에 존재한다.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되 공공성과 개방성을 함께 고려하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공간문화를 확산한다.

제4조 (시민숙의) 공간은 특정 권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쓰임새에 시민의 숙의와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공간의 개발·이용·보전·변화에 관한 결정은 정치·자본 등 특정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의사결정은 시민 참여와 공개된 숙의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 (지역성) 지역 특색과 기억을 다원화하여 참된 지역성을 창출한다.

공간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생활의 흔적을 담아내야 한다. 획일적인 개발과 상업화를 넘어 지역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와 특색이 살아나도록 조성한다.

제6조 (걷고 싶은 도시) 걷고 싶은 도시가 최고의 도시이며, 잠깐의 걷기와 앉기가 최고의 하루를 만든다.

시민이 걷고 머물며 공간의 즐거움과 감동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기능 중심의 공간을 넘어 다채로우면서도 조화로운 도시 풍경을 추구한다.

제7조 (다원성과 포용성) 다양한 세계관과 문화가 공존하는 포용적 공간을 조성한다.

공간은 서로 다른 삶의 방식과 문화, 가치관이 공존하는 장이다. 모든 세대와 사회적 소수자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포용적 공간을 조성한다.

8조 (일상의 여유) 누구나 쉽게 머물고 쉬며 소통할 수 있는 일상의 휴식 공간을 확충한다.

공간은 이동과 소비의 장소를 넘어 머무름과 만남, 회복이 이루어지는 장이다. 시민이 일상 속에서 쉬고 만나고 소통할 수 있는 광장·골목·공원 등 생활밀착형 공간을 확대한다.

제9조 (시간과 기억의 축적) 공간은 시간의 켜와 기억이 쌓여 갈수록 매력적 자산이 된다.

공간은 철거와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축적되는 자산이다. 경험과 기억,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을 보존하고 계승한다.

제10조 (지속가능성) 공간은 다음 세대로부터 빌려 쓰는 것이며, 미래 세대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공간정책은 미래세대와 생태환경에 대한 책임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의 필요를 넘어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다.

제11조 (정주성) 모든 세대와 계층이 함께 살아가며 미래를 이어갈 수 있는 입체적인 공간만이 지속 가능하다.

공간은 누구나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지속 가능하다. 주거·교통·안전 등 생활의 기본 조건을 우선 보장하고, 누구나 살기 좋고 살고 싶은 정주환경을 만든다.

제12조 (삶의 질과 행복) 공간은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며, 시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이다.

공간은 시민의 행복과 공동체의 안녕을 뒷받침하는 기반이다. 공간정책은 삶의 질 향상과 일상의 풍요를 목표로 추진되어야 한다.

헌장의 이행

헌장의 이행을 위해 시민 및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의회, 중앙정부 등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시민과 지역사회

1. 시민은 공간의 이용자를 넘어 공간의 주체로 참여하고 공간의 보전과 발전에 대한 공동체적 책임을 함께 나눈다.
2. 지역사회와 전문가, 시민, 언론은 지역의 역사·문화·생활 자산을 보존·공유하며 공공성과 공간 정의의 원칙에 따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협력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1. 공간을 시민의 권리이자 공공자산으로 인식하고, 공간민주주의 원칙을 정책과 제도 전반에 반영하며, 행정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지양하고 시민참여 기반의 공간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한다.
2. 공간불평등과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의 공간권을 보장하며 지속가능한 공간 정책을 추진한다.

중앙정부

1. 지역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간민주주의의 원칙이 국가정책과 제도 전반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2. 지역이 스스로 공간의 미래를 설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며, 공간 불평등과 지역격차 해소,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충실히 제공한다.

공간민주주의 헌장(안) 설명자료


걷고 싶고, 머물고 싶고, 가슴 뛰는 공간
그것이 공간민주주의다
공간민주주의 헌장(안)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residential Commission on Architecture Policy


걷고 싶고, 머물고 싶고, 가슴 뛰는 공간
그것이
공간민주주의다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residential Commission on Architecture Policy
01
공간민주주의
헌장 전문
02
공간민주주의
3대 원칙
03
공간민주주의
6대 극복과제
04
공간민주주의
12대 실천의제

03

'공간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공간 = 삶을 담는 그릇

도시, 건축, 공간환경, 자연
아파트, 복도, 골목, 광장, 공원 등

일상 속
매일 경험하는 공간

공간민주주의

아직은 낯선 말입니다.
우리 일상 속 공간, 그 공간에서
민주주의를 찾을 수 있을까요?

04

왜 공간민주주의인가?

대한민국의 큰 성취,
K-민주주의와
경제민주주의

K-민주주의
국민주권확립,
시민참여 확대

경제민주주의
공정과
형평성 확립

공간

사람, 공동체, 삶의 질을
결정하는 기반

'공간민주주의'

이제 민주주의는
시민이 살아가는 공간으로
확장되어야합니다.

05

왜 필요한가?



새로운 공간정책 철학, 공간 민주주의

개발대상 → 시민 권리·공동자산 | 시민참여 | 지속가능성 | 미래세대

'공간'이란 삶의 그릇이 되는 도시·건축·공간환경·조경·자연생태를 포괄하는 것으로, 시민이 매일 경험하는 아파트 복도, 골목, 광장, 공원, 수변공간까지를 포함한다.

06

공간민주주의 헌장

3대 기본원칙 → **6대** 극복과제 → **12대** 실천과제

우리는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관계를 맺으며, 민주주의를 경험한다.

07

걷고 싶고, 머물고 싶고, 가슴 뛰는 공간

공간민주주의 헌장 3대 기본원칙

1

시민의 권리와 참여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결정하는 공간

2

다원성과 포용성

특권 없이 모두가 함께
나누고 누리는 공간

3

지속가능성과 지역성

지역 고유의 가치를 지키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

08

원칙1

시민의 권리와 참여

시민은 자신이 살아가고 전유하는 공간의 주체입니다.

모든 시민은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의 정책과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개인공간·공유공간·공공공간 모두에서 공동체 의식과 책임을 함께 키워 나갑니다.

1

참여할 권리

2

공간의 주체성

3

공동체 의식

원칙2

다원성과 포용성

공간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고 다채로움을 향유하는 장입니다.

지역 고유의 역사와 정체성, 시민의 창발적 의견이 살아나도록 조성되어야 하며,
다양한 삶과 문화가 공존하는 포용적인 환경을 지향합니다.

1	2	3
차이의 존중	다양한 삶과 문화	포용적 환경

원칙3

지속가능성과 지역성

공간은 미래세대와 함께 사용하는 자산입니다.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의 삶과 공동체가 지속가능하게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관리합니다.
또한 지역소멸에 대응하여 정주 여건과 생활 기반을 강화합니다.

1	2	3
미래세대의 자산	생태환경과 조화	정주 기반 강화

걷고 싶고, 머물고 싶고, 가슴 뛰는 공간

공간민주주의 현장 6대 극복과제

문제1
권력 독점에 따른 공간 주체성 약화

문제2
양극화에 따른 공동체와 공간 단절

문제3
획일화에 따른 다양성과 지역성 상실

문제4
과시적 랜드마크로 인한 감동 상실

문제5
개발로 인한 시공간 단절 및 훼손

문제6
지역소멸에 따른 지속가능성 위기

문제1 권력 독점에 따른 공간 주체성 약화

왜 극복해야 하는가?

공간의 분절은 사회적 단절로 연결

민주주의는 서로 소통하는 공간 위에서 성장

공간적 유대 회복을 통해 공동체 회복이 필요

치유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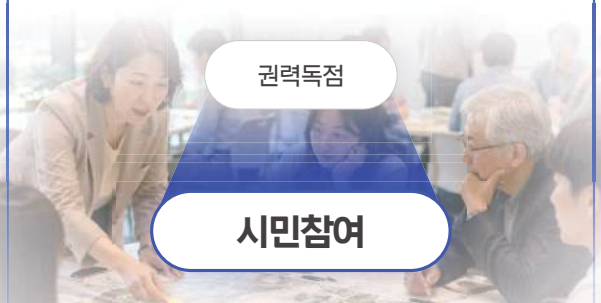

시민 거버넌스를 통해 공간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주체의식을 높이고,
공간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한다.

13

문제2 양극화에 따른 공동체 단절과 공간 분절

왜 극복해야 하는가?

도시의 경쟁력이자 공동체 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지역성

지역을 역사와 문화, 생활의 흔적이 살아 있는 공간으로 보존

시민의 자긍심 향상과 공동체 지속

치유법



단절된 공간 구조를 개선하여 사람과 사람, 공간과 일상이 **연결되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체적 관계**를 회복한다.

14

문제3 획일화에 따른 다양성과 지역성의 상실

왜 극복해야 하는가?

도시의 품격은 랜드마크의 높이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 경험에서 결정

걷고 머물며 사람을 만나는 공간 조성

시민의 삶의 질과 공동체 만족도 향상

치유법



획일적 개발을 넘어 **지역의 정체성과 기억**을 되살리고, 지역 특성과 다양한 삶의 방식이 반영된 공간을 만든다.

문제4

과시적 랜드마크 개발에 따른 일상의 감동 상실

왜 극복해야 하는가?

도시의 품격은 랜드마크의 높이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 경험에서 결정

↓

걷고 머물며 사람을 만나는 공간 조성

↓

시민의 삶의 질과 공동체 만족도 향상

치유법



전시적인 개발 경쟁을 넘어
시민이 걷고 머물며 즐거움과 감동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

문제5

개발 압력에 따른 시공간 단절과 공간 자산 훼손

왜 극복해야 하는가?

도시는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

↓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커지는,
기억과 역사성이 축적된 공간 보존

↓

도시의 정체성과 문화적 깊이를 형성

치유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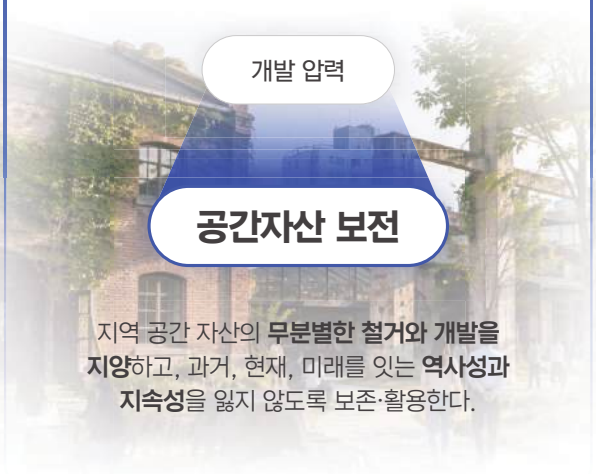

지역 공간 자산의 **무분별한 철거와 개발을**
지양하고,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역사성과**
지속성을 잃지 않도록 보존·활용한다.

17

문제6

지역소멸에 따른 지속가능성 위기

왜 극복해야 하는가?

지역의 지속가능성은 주민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활환경에서 시작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지역 공동체 유지와 균형 있는 국토 발전

치유법



정주 여건과 생활 기반을 강화하고, 모든 세대와 계층, 소수자에게 열린 **지속가능한 공간**을 만든다.

걷고 싶고, 머물고 싶고, 가슴 뛰는 공간

공간민주주의 헌장 12대 실천의제

- 제 1조 공간 주권
- 제 2조 관계성
- 제 3조 사적 공간의 사회적 책임
- 제 4조 시민 숙의
- 제 5조 지역성
- 제 6조 걷고 싶은 도시
- 제 7조 다원성과 포용성
- 제 8조 일상의 여유
- 제 9조 시간과 기억의 축적
- 제 10조 지속가능성
- 제 11조 정주성
- 제 12조 삶의 질과 행복

제 1조

공간 주권

공간은 함께 살아가는 모두의 것이며, 시민의 참여로 만들어 간다.

공간은 특정 권력이나 자본의 소유물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공동 자산이다.
모든 공간 정책과 개발 사업은 시민 참여와 공개된 절차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시민이 공간 형성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

정책 방향

공간주권 보장	공동자산 관리체계 강화	시민참여 보장	공간주권 거버넌스 확립
시민이 정책의 대상이 아닌 주체가 되도록 참여권 보장	시민·행정·전문가가 함께 관리하는 체계 마련	일회성 행사가 아닌 상시 참여 구조 구축	계획·집행·운영 전 과정의 협력체계 구축

제 2조

관계성

공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보이지 않는 선을 잇는다.

공간은 사람과 사람, 행위와 환경을 서로 잇게 하는 기반이다.
단절된 공간을 회복하고 공동체적 소통과 관계가 살아나는 열린 구조를 지향한다

정책 방향

공간연계성 강화	생활권 관계망 확충	사회적 관계 회복	도시 통합성 증진
보행·자전거·대중교통 중심 이동체계 구축	주거지와 공원·학교·문화시설·생활SOC의 연계	교류의 공간·프로그램 확대, 사회적 고립 완화	지역 간 공간격차와 단절 해소

제 3조

사적 공간의 사회적 책임

심지어 사적 공간도 사회적 소통 체계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사적 공간 또한 공동체와 관계 속에 존재한다.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되 공공성과 개방성을 함께 고려하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공간문화를 확산한다

정책 방향

공공성과 사유권의 조화	개방형 공간 확대	민간의 공공기여 확대	지역사회 공간공유 활성화
균형 있는 공간관리 체계 구축	공개공지, 개방형 보행통로, 열린 저층부 공간 확대	개발사업이 공공시설·생활서비스를 함께 제공	민간 보유 공간의 지역사회 공유

제 4조

시민 숙의

공간은 특정 권력의 전유물이 아닌, 시민 공동의 이익을 위한다.

공간의 개발·이용·보전·변화에 관한 결정은 정치·자본 등 특정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의사결정은 시민 참여와 공개된 숙의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정책 방향

숙의 기반 의사결정체계 구축	시민 공론장 활성화	계획과정의 투명성 강화	갈등관리 및 시민 역량 강화
충분한 정보 제공과 토론 과정 보장	시민 숙의를 위한 토론 플랫폼 확대	추진 과정과 의사결정 내용 공개	지속적인 시민교육과 학습 프로그램 확대

제 5조

지역성

지역 특색과 기억을 다원화하여 참된 지역성을 창출한다.

공간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생활의 흔적을 담아내야 한다.
획일적인 개발과 상업화를 넘어 지역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와 특색이 살아 있도록 조성한다

정책 방향

지역 고유성 보전	역사와 문화자산 활용	생활문화·공동체 기억 계승	지역 맞춤형 공간 조성
역사·문화·자연환경·생활양식을 공간계획에 반영	보존을 넘어 관광·문화·교육 자원으로 연결	기록하고 공유하여 정체성 유지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관·건축 정책

제 6조

걷고 싶은 도시

걷고 머물고 싶은 도시는 머무는 순간을 최고의 하루로 만든다.

시민이 걷고 머물며 공간의 즐거움과 감동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기능 중심의 공간을 넘어 다채로우면서도 조화로운 도시 풍경을 추구한다.

정책 방향

보행 중심 도시 전환	보행친화 공간 확충	걷고싶은 거리 조성	녹지·수변 연계 보행환경 구축
자동차 중심에서 사람 중심 공간구조로	광장·공원·가로·수변공간의 휴식·문화 기능	보행환경 개선과 가로경관 향상	공원·하천·녹지축을 잇는 녹색 네트워크 구축

제 7조

다원성과 포용성

다양한 세계관과 문화가 공존하는 포용적 공간을 조성한다.

공간은 다원적 삶의 방식과 문화, 가치관이 공존하는 장이다.
모든 세대와 사회적 소수자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포용적 환경을 조성한다

정책 방향

공간 접근성 보장	사회적 약자 배려	문화적 다양성 존중	세대·계층 통합
연령·성별·장애 여부와 무관한 물리적·사회적 접근성	정책과 설계 과정에 사회적 약자의 요구 적극 반영	다양한 문화와 생활방식이 공존하는 환경 구축	함께 이용하고 교류하는 공간 확대

제 8조

일상의 여유

누구나 쉽게 머물고 소통하는 일상의 휴식 공간을 확충한다.

공간은 이동과 소비의 장소를 넘어 머무름과 만남, 회복이 이루어지는 장이다.
휴식과 교류를 위해서 광장·골목·공원 등 일상 속에서 활착가능한 공간을 확대한다.

정책 방향

생활권 휴식공간 확충	체류형 공공공간 확대	일상 여가 문화공간 활성화	회복형 녹지·수변 환경 조성
공원·쉼터·쌈지공원·포켓파크 확대	통행 중심에서 머물고 즐기는 공간으로	광장·마을커뮤니티 공간·주민활동 거점	녹지·수변·문화공간 활용 환경 조성

제 9조

시간과 기억의 축적

공간은 시간과 기억이 쌓일수록 매력적 자산이 된다.

공간은 철거와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축적되는 자산이다.
기억과 경험,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을 보존하고 계승한다.

정책 방향

역사·문화자산 보존	재생 중심 공간정책 추진	생활기억 기록과 계승	건축자산 활용 확대
도시의 정체성과 연속성 유지	철거·신축에서 보존·재생·재활용으로	생활유산을 발굴·기록하여 자산으로 축적	근현대 건축물·유휴공간의 새로운 가치 창출

제 10조

지속가능성

공간은 미래 세대에게 빌린 자산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공간정책은 미래세대와 생태환경에 대한 책임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현재의 필요를 넘어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다.

정책 방향

탄소중립 공간체계 구축	생태환경 보전·회복력 강화	순환형 공간관리 확대	미래세대 중심 공간정책 추진
도시계획·건축·교통·에너지 전반에 반영	녹지축과 생태축 보호, 훼손 자연 복원	폭염·홍수·가뭄 대응, 물순환·녹지기반 확충	장기적 관점의 의사결정 체계

제 11조 **정주성**

모든 세대와 미래를 이어갈 수 있는 공간을 지속한다.

공간은 누구나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지속 가능하다.
주거·교통·안전 등 생활의 기본 조건을 우선 보장하고, 살 수 있으며 살고 싶은 정주환경을 만든다

정책 방향

생활SOC 확충	생활 거점 육성	생애주기 맞춤형 정주 지원	생활서비스 접근성 강화
교육·문화·체육·복지·돌봄 서비스의 근거리 이용	생활권 중심지와 지역 거점시설 육성	주거·일자리·돌봄 커뮤니티 공간 확충	교통·의료·복지 접근성 향상

제 12조 **삶의 질과 행복**

공간은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며, 시민 삶의 질을 결정한다.

공간은 시민의 행복과 공동체의 안녕을 뒷받침하는 기반이다.
공간정책은 삶의 질 향상과 일상의 풍요를 목표로 추진되어야 한다

정책 방향

공간복지 확대	삶의 질 중심 정책 전환	체류·여가 공간 확충	건강·문화·여가 통합환경 조성
거주지·소득과 관계없는 양질의 공간서비스	면적·투자액이 아닌 시민 체감형 지표	광장·공원·녹지 수변공간 확대	유기적으로 연결된 생활환경 조성

31

공간민주주의가 만드는 미래

- 일상 삶의 질 향상 »
- 지역 경쟁력 강화 »
- 공동체 회복 »
- 국민 행복 증진 향상 »

BEFORE	AFTER
자동차 중심	보행 중심
획일적 도시	지역성 있는 도시
단절된 공동체	연결된 공동체
개발 중심	사람 중심

32

공간민주주의 헌장

제언

공간민주주의 헌장은 선언에 그치지 않습니다.

일상 속 공간에서
시민과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그리고 중앙정부가
실천할 때 비로소
공간민주주의는 실현됩니다.

공간민주주의 실현

- 시민과 지역사회
- 지자체와 지방의회
- 중앙 정부

01 시민과 지역사회

참여하고, 함께 만들고, 함께 돌봅니다.

1. 시민 참여와 공동체 의식

시민은 공간의 이용자를 넘어 공간의
주체로 참여하고, 공간의 보전과 발전에 대한
공동체적 책임을 함께 나눈다.

2. 지역사회 협력과 지속가능성

지역사회와 전문가, 민간, 언론은 지역의
역사·문화·생활 자산을 보존·공유하며,
공공성과 공간 정의의 원칙에 따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협력한다.

02 지자체와 지방의회

계획하고, 연계하고, 실행합니다.

1. 시민참여 기반의 공간 거버넌스

공간을 시민의 권리이자 공공자산으로 인식하고,
공간민주주의 원칙을 정책과 제도에 반영하며,
행정의 독단적 의사결정을 지양하고
시민참여 기반의 공간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2. 공간권 보장과 지속가능한 정책

공간불평등과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의 공간권을 보장하며
지속가능한 공간 정책을 추진한다.

03 **중앙정부**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지원합니다.

1. 지역 자율성과 다양성 존중

지역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간민주주의의 원칙이 국가정책과 제도
전반에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2. 지역 주도의 공간과 국가 지원

지역이 공간의 미래를 설계 및 실천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마련하며, 공간 불평등과
지역격차 해소, 기후위기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지원을 충실히 제공한다.



주제 발표 01

공간민주주의 헌장 제정을 위한 기초 논의

하장호 | 문화연대 정책위원장

공간민주주의 헌장 제정을 위한 기초 논의

헌장 제정의 의미 · 주요 타 헌장의 사례 · 헌장 제정의 구조와 실천

문화연대 정책위원장 하장호

CONTENTS

목차

Ⅰ 헌장 제정의 의미

사회헌장으로서 '공간민주주의 헌장'을 제정한다는 것의 의미

Ⅱ 주요 타 헌장의 사례

세계도시권헌장 · 서울시민 문화권선언 · 광주인권헌장

Ⅲ 헌장 제정의 구조

전문부터 이행 기제까지, 10대 범주로 구성하는 헌장 체계

Ⅰ

헌장 제정의 의미

사회헌장으로서 '공간민주주의 헌장'을 제정한다는 것의 의미

Ⅰ. 헌장 제정의 의미

기술적 지침을 넘어, 사회의 패러다임 전환

'공간민주주의 헌장'을 사회헌장(Social Charter)으로 제정한다는 것은 도시 계획의 기술적 지침을 만드는 것을 넘어, 사회가 공간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을 의미함

1

공간 = 부동산·자산

사적 소유의 대상,
행정·전문가 중심 결정

2

헌장을 통한 공식화

공간을 민주주의의
기본 토대로 선언

3

공간 주권의 형성

시민이 삶의 환경을
스스로 결정·구성

→ 향후 정부·지방정부의 공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중요한 규범적 기준을 제시

Ⅰ. 헌장 제정의 의미

헌장이 담아내는 네 가지 의미

① 사회권으로서 공간권 정립

공간을 '부동산·자산'이 아닌 시민 모두의 '권리'로 재정의하고, 주거·휴식·문화 향유의 물리적 토대를 국가와 사회의 보장 의무로 확인

② 공간 생산의 민주적 정당성

전문가·행정 중심의 일방적 설계에서 벗어나 거주자·이용자가 결정권을 갖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공적 공간을 공론장으로 선언

③ 불평등·배제를 넘어 공동체 회복

젠트리피케이션·게이티드 커뮤니티 등 배제적 공간구조를 지양하고, 공공재로서 토지·공간의 이익이 사회로 환원되는 구조 천명

④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규범적 토대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 보존의 윤리적 약속, 탄소중립·생태 중심 재구성, 커먼즈 확대를 통한 공적 연대 강화

Ⅰ. 헌장 제정의 의미

네 가지 의미, 그 구체적인 내용

① 사회권으로서 공간권 정립	• 공간 이용·향유·형성 참여권을 보편적 인권의 영역으로 확장	• 공간을 '부동산·자산'이 아닌 시민의 '권리'로 재정의	• 주거·휴식·문화 향유의 물리적 토대는 국가·사회의 보장 의무
② 공간 생산의 민주적 정당성	• 공간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결정되는가의 절차적 정의를 규정	• 전문가·행정 중심 설계에서 거주자·이용자 중심 거버넌스로 전환	• 공적 공간(Public Sphere)을 민주주의를 위한 공론장으로 확인
③ 불평등·배제를 넘어 공동체 회복	• 공간에 투영된 사회적 위계를 확인하고 극복 의지를 표명	• 젠트리피케이션·게이티드 커뮤니티 등 배제적 공간구조 지양	• 공공재 이익이 사회 전체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 천명
④ 지속가능한 공동체의 규범적 토대	•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 보존의 윤리적 약속을 제시	• 탄소중립·생태 중심 공간 재구성을 사회적 합의 수준에서 강제	• 커먼즈 공간 확대로 사회적 자본 축적과 공적 연대 확대

Ⅱ

주요 타 헌장의 사례

세계도시권헌장 · 서울시민 문화권선언 · 광주인권헌장

Ⅱ. 주요 타 헌장의 사례

세 가지 사회헌장, 세 가지 접근

2005

세계 도시권 헌장

세계사회포럼(WSF), 포르투알레그리 도시를 '자본 축적 수단'이 아닌 '공동의 자산'으로 재정의

2012

광주인권헌장

5·18 정신 계승, 시민참여형 제정
전문 + 5장 18개조 + 이행 규정
도시행정의 인권적 지침서

2016

서울시민 문화권 선언

문화정책을 시혜적 복지에서 보편적 권리로 전환
'선언'에 머문 한계

Ⅱ. 주요 타 헌장의 사례 — 사례 1 · 1/2

세계 도시권 헌장 (2005)

① 도시권의 정의와 원칙

2005년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리 세계사회포럼(WSF)에서 제정 · 도시를 자본 축적 수단이 아닌 주민의 삶과 권리가 실현되는 '공동의 자산'으로 재정의

제1조. 도시에 대한 권리

성별·나이·소득·국적·이주 상황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이 갖는 집합적 권리 — 거주 기간과 무관하게 모든 거주자를 시민으로 인정하며, 국제적으로 인정된 인권과 상호의존적

- 노동권 · 노조 결성권
- 사회서비스 이용권
- 식량·의복·주거권
- 공교육·문화·정치참여권
- 소수자·문화 다양성 존중
- 발전권·건강한 환경권
- 도시계획 참여권
-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권리

제2조. 원칙과 전략적 토대

1. 시민의식의 완전한 실천과 민주적 관리
2. 도시와 도시자산의 사회적 기능
3. 평등 및 차별 금지
4. 취약집단의 특별 보호
5. 민간 부문의 사회적 헌신
6. 연대 경제와 혁신적 과세 정책

Ⅱ. 주요 타 헌장의 사례 — 사례 1 · 2/2

세계 도시권 헌장 (2005)

② 시민권의 실현과 이행

도시계획 참여부터 경제·사회·문화·환경 발전권까지, 헌장은 4개 Part의 조항으로 시민권의 실현 방식을 규정

Part Ⅰ	일반 조항	도시권의 정의 · 원칙과 전략적 토대
Part Ⅱ	시민권의 실현과 참여	도시 계획·관리 참여, 주거지의 사회적 생산
Part Ⅲ	경제·사회·문화·환경 발전권	공공서비스·이동·주거·노동·환경에 대한 권리
Part Ⅳ	최종 조항	국가의 의무, 이행·모니터링, 권리 침해 구제

헌장과 관련된 약속 (제21조)

사회 네트워크·조직 —
헌장 대중화, 국제 연대 증진

중앙·지방정부 —
권리 기반 제도적 틀 수립, 파트너십 구축

국회의원 —
권리를 인정하는 법 제정, 국제 의무 결합

국제기구 —
이행 지원, 인권조약 적용 모니터링

확산과 의의

국가 간 강제조약은 아니지만 브라질 도시법(2001), 광주·멕시코시티·바르셀로나 등 인권도시 운동, 각국의 도시 헌장·인권 조례 제정에 영향



서울시민 문화권 선언 (2016)

① 배경과 문화권의 내용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을 시혜적 복지에서 보편적 권리로 전환하기 위해 2016년 서울시가 발표 ·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 문화기본법, 지역문화진흥법 등을 근거로 함 · 중장기 비전 '문화시민도시 서울', 서울예술플랜 수립의 기준점으로 활용

제1장. 서울시민 문화권 (제1~4조)

향유권
차별 없이 다양한 문화예술을 즐길 권리

접근권
문화 콘텐츠·정보·시설·공간에 접근할 권리

교육권
생애주기에 맞는 문화예술 교육을 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
생각을 문화예술로 표현하고 비평할 권리

제2장. 서울의 문화환경 (제5~9조)

문화다양성 | 문화경관 | 문화자원 | 문화공동체 | 문화역량

서울시민 문화권 선언 (2016)

② 협치와 의무, 그리고 한계

제3장. 문화권을 위한 협치 (제10~13조)

시민이 문화정책 수립·집행·평가 전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제도적 절차를 마련 · 도시계획·도시재생 사업에서도 예술가와 시민의 주체적 참여 기회를 보장

제4장. 시민과 서울시의 의무 (제14~17조)

시민의 의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동시에 타인의 권리를 존중, 사회적 약자의 문화 격차 해소에 협력
서울시의 의무	문화기반시설 공급, 문화유산 보존, 교육 등 제도적·재정적 지원
문화권 원탁회의	시민이 직접 참여·주도하는 위원회, 각계각층이 고루 참여하는 원탁회의 개최

한계와 시사점

'선언'에 머물러 규범력에 한계 — 정권 교체 후 선언 자체는 활용되지 못했으나, 이를 통해 만들어진 정책 지표 체계는 일부 작동 중

→ '헌장'으로서의 규범적 지위 확보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



Ⅱ. 주요 타 헌장의 사례 — 사례 3 · 1/2

광주인권헌장 (2012)

① 배경과 자유·행복의 도시

2012년 5월 21일 선포 · '인권도시 광주'의 가치와 철학을 집약, 도시행정의 인권적 지침서 역할 · 전문 + 5장 18개조 + 헌장의 이행으로 구성 · 5·18 정신 계승, 2011년 세계인권도시포럼(광주) 개최가 제정의 중요한 계기

Chapter 1.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제1조 사상·의사 표현의 자유와 소통의 기회 보장

제2조 참여와 정보 공유를 통한 시민 자치 실현

제3조 인권 문화와 민주 시민 의식 함양

Chapter 2.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

제4조 노동을 통한 자기실현과 노동자의 권리 보장

제5조 질병의 공포로부터 벗어난 건강한 생활 보장

제6조 적절한 주거와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

제7조 학대와 폭력, 방임이 없는 가정·학교·직장

Ⅱ. 주요 타 헌장의 사례 — 사례 3 · 2/2

광주인권헌장 (2012)

② 사회적 약자·환경·문화, 그리고 이행

3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도시

제8~12조 · 최저생활 · 성평등 · 아동·청소년·노인 돌봄 · 장애인 권리 · 문화 정체성 존중

4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제13~15조 · 환경·여가시설 공유 · 장벽 없는 도시 · 범죄·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5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

제16~18조 · 교육의 다양성 · 문화예술 향유 · 국내외 인권 증진 기여

헌장의 이행

제1조 실천 주체와 범위 — 광주 시민 전체, 특히 공무원·법 집행 공직자가 지속 실천

제2조 정책과 제도를 통한 이행 — 인권 실태 조사·공표, 인권 증진 기본계획 수립

제3조 헌장의 개정 — 시민적 합의를 거쳐 민주적 절차로 개정

공간민주주의적 함의

인권 중심 헌장이지만, 도시라는 공간과 민주주의 가치를 함께 다루며 도시의 미래비전과 인권 실현을 연계

→ 시민참여형 제정 절차의 모범 사례



Ⅱ. 주요 타 헌장의 사례

세 사례가 주는 시사점

세계 도시권 헌장	포괄적 권리 목록의 체계화 — 도시권을 노동·주거·환경·참여권까지 아우르는 권리 묶음으로 구성하는 방식을 참조
서울시민 문화권 선언	'선언'의 한계 — 규범적 구속력이 약할 경우 정권 교체 등에 따라 활용이 중단될 수 있음 → '헌장'으로서 지위 확보 필요
광주인권헌장	절차적 정당성의 모범 — 제정위원회·시민공청회 등 시민참여형 제정과정 자체가 헌장의 정당성을 구성

→ '공간민주주의 헌장'은 세계도시권헌장의 권리 포괄성, 광주인권헌장의 절차적 정당성을 결합하고, 서울시 사례의 한계를 넘어 규범적 구속력을 갖는 '헌장'으로 제정될 필요

Ⅲ

헌장 제정의 구조

전문부터 이행 기제까지, 10대 범주로 구성하는 헌장 체계

Ⅲ. 헌장 제정의 구조

10대 구성 범주

선언적 기초	권리와 실현 원칙	책임과 지속성
1 **전문** 선언적·역사적 기반	4 **권리 목록**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가	8 **의무 주체** 누가 책임을 지는가
2 **개념 정의** 용어·철학적 기초	5 **금지·극복** 무엇이 배제되어야 하는가	9 **이행 기제** 어떻게 작동하게 할 것인가
3 **권리 주체** 누가 권리를 갖는가	6 **거버넌스**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가	10 **미래지향** 지속가능한 공간민주주의
	7 **권리 연계** 다른 권리와의 연결	

Ⅲ. 헌장 제정의 구조 — 4. 권리 목록

공간권의 내용: 8대 권리

시민이 공간에 대해 갖는 구체적인 권리를 열거하는 부분으로, 헌장의 실질적 핵심 — 세계도시권헌장의 권리 목록 방식을 참조

접근권 공공공간·녹지·문화공간·교통에 차별 없이 접근할 권리	**거주권** 안전하고 적절한 주거 공간에서 살 권리	**이동권** 도시와 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권리	**참여권** 공간 계획·개발·운영 과정에 참여할 권리
정보권 공간 관련 계획·개발·예산 정보에 접근할 권리	**보존권** 역사적·문화적·생태적 공간을 보전할 권리	**저항권** 공간 침탈·강제 철거·개발 독점에 저항할 권리	**공간 형성권** 스스로 공간을 만들고 가꿀 권리(자치적 생산)

헌장 제정 이후, 실천을 위한 방법론

헌장은 선언에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이행 기제를 갖출 때 실질적인 규범력을 갖는다

① 법·제도적 기반 마련

공간민주주의 관련 법령·조례 정비를 촉구하고, 공간 영향평가 제도(공간 정의 관점의 사전 검토)를 도입

② 실태조사와 상시 점검

공간 불평등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공표하고, 헌장 이행을 점검하는 상설 기구를 구성

③ 권리 구제 절차의 확립

시민의 공간권이 침해되었을 때 이를 구제할 수 있는 행정적·법적 절차를 마련

④ 연대와 교육을 통한 확산

지역 간·국제 간 공간민주주의 연대·협력을 넓히고, 교육과 문화로 헌장의 가치를 확산

주제 발표 02

공간민주주의 헌장 실행 전략

안상욱 | 도시연대 이사장

(공간민주주의헌장 발표 국회토론회)

공간민주주의헌장 실행 전략

2026. 08. 27

안 상 욱
(aswnby@naver.com ,010-8903-1728)

차례

Ⅰ. '공간민주주의 헌장' 작성 과정 및 철학

Ⅱ. 시대정신과 공간민주주의 필요성

Ⅲ. 지방정부의 공간민주주의 추진 필요성

Ⅳ. 지방정부의 실행 전략

1. 공간민주주의 헌장 작성과정 및 철학

작성과정

공간민주주의 소통 TF 구성과 운영

- 26. 1.14. 지방자치 30년, 공간민주주의 국회 토론회 개최, 공간민주주의 이슈 제기
- 26. 3.12. **제8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자문단 구성, 공간민주주의 분야 발굴**
- 26. 3.24. **공간민주주의 소통 TF 구성** 및 제1차 회의, 공간민주주의 어젠다 제안 방향 논의
  ※ 의원장 및 기획단, 안상욱(도시연대), 전진성(인권연대), 하장호(문화연대), 함돈균,최은영,이민우,김대
- 26. 4. 7. 제 2차 회의, 공간민주주의 어젠다 발굴
- 26. 4.30. 제 3차 회의, 실무그룹체제로 전환, 아젠다 틀잡기, **1전문 - 3원칙 - 6과제 - 12아젠다의 헌장 구조**로 논의
  ※ 단장 안상욱(도시연대), 단장 홍경구(국건우), 위원 전진성(인권연대), 위원 하장호(문화연대), 간사 김성준(아우리), 국건위 기획단
- 26. 6. 1. 제 4차 회의, 공간민주주의 헌장(안) 검토와 논의, 국회토론회 개최 추진
- 26. 6.17. 제 5차 회의, 공간민주주의 정책아젠다(안) 검토 및 논의, 헌장 논의
- 26. 7. 8. 제 6차 회의, 공간민주주의 정책아젠다(안) 논의, 허설서 논의, 정책토론회 논의

□ 8기 위원회 자문단 : 26개 관계 기관 및 단체 대표 [26명]

분 야	기관 및 단체 명칭	위촉 대상자	비고(직위)
건 축 (6)	1. 대한건축학회	백진원	회장
	2. 대한건축사협회	김재국	회장
	3. 한국건축가협회	박상진	회장
	4. 서울특별시의회	임형남	의원
	5. 한국계성건축가협회	서명주	회장
	6. 서울건축포럼	홍성용	의장
건 설 (7)	7. 대한건설협회	(위촉 예정)	-
	8. 대한토목공학회	지홍철	부회장
	9.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박종면	회장
	10. 대한건설협회	황광식	회장
	11. 한국건설관리사업협회	윤수원	부회장
	12. 건설산업비선로원	곤오승	사무총장
	13. 한국리모델링협회	김태균	회장
도시설계 (2)	14. 한국도시설계학회	박태원	회장
	15.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경일	회장
조 경(1)	16. 조경학회	배정한	회장
R & D (5)	17.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김정희	원장
	18. 건축공간연구원	박원용	원장
	19. 국토연구원	김현수	부원장
	20. 토지주택연구원	정의무	원장
	2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상규	선임연구위원
문 화 (2)	22. 지역문화진흥원	정광호	원장
	2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노영순	경영기획본부장
공간민주주의 (3)	24. 도시사회학회(인권연대)	전진성	회장
	25. 문학연대	하장호	정책위원장
	26. 도시연대	안상욱	이사장







1. 공간민주주의 헌장 작성과정 및 철학

공간민주주의헌장





1. 공간민주주의 헌장 작성과정 및 철학

철학



공간-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좁은 차원의 정치 행정 원리를 넘어서

공간을 통해 국민 다수의 삶의 온전성을 실현하려는 원칙 설정이기에

이는 **헌법적 언어로 사유되어야 정책적 이념으로서 실효성을 지닐 수 있다.**

☞ 모든 시민의 존엄과 행복 그리고 삶의 온전성을 담아내는 헌법적 이념의 경험적 영역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공화주의적 공간

- 국토(도시,건축 따위)는 **공공의 자산**이며, 그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함께 진다
- **행정권력, 자본권력, 기술권력이** 공간의 결정과 활용을 **독점해서는 아니 된다.**
- 공간의 점유, 소유, 활용은 **법과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 공간의 **공공성은 시민적 관심과 참여의 대상**이다.

(함돈균, 지방자치 30년, 공간민주주의 국회 토론회, 2026. 1. 14)

5

1. 공간민주주의 헌장 작성과정 및 철학

철학

Paul Davidoff



1965년 주창
시민참여 도시계획
(Advocacy Planning)

도시계획의 결정, 집행은 시민이



하버마스

생활세계
(life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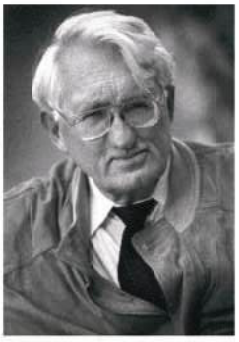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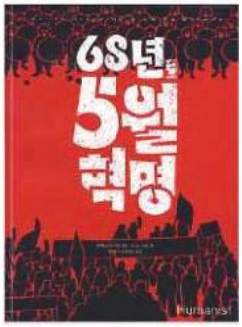

주민참여 계획
커뮤니티 디자인 발전
(도시, 조경, 건축, 문화)

공간민주주의 헌장



2.시대정신과 공간민주주의

시대정신





7

2.시대정신과 공간민주주의

시대정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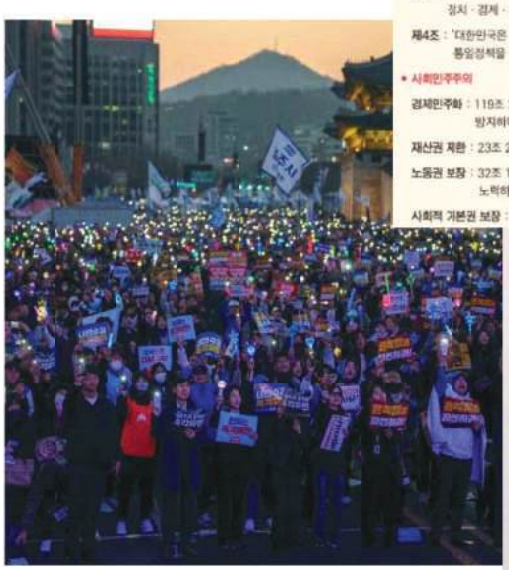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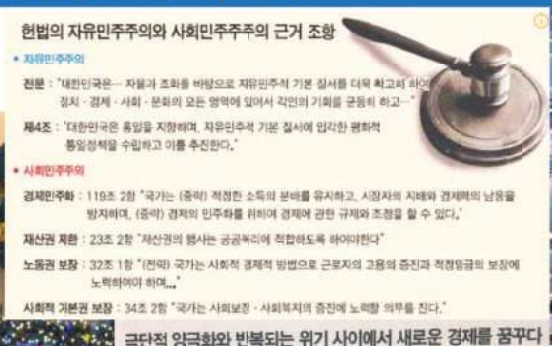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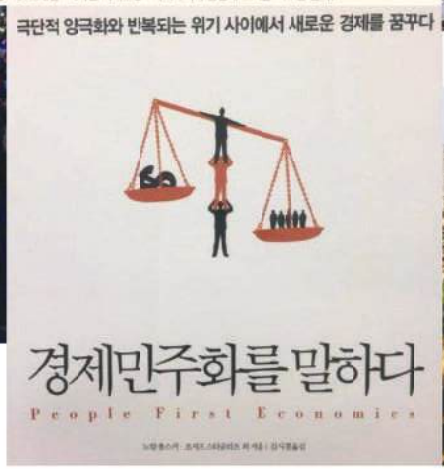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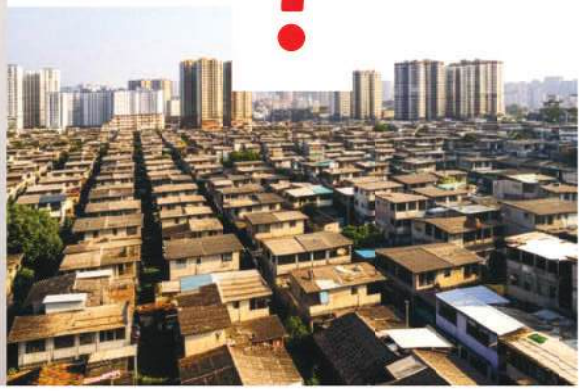

2.시대정신과 공간민주주의의 필요성

2016년 UN 헤비타트 Ⅲ : 모두를 위한 도시(도시권) 선언



해비타트3에서 제시한 새로운 도시의제 (NUA)

모두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정주를 위한 키토 선언

서문	• 해비타트3에서의 NUA 채택 선언 • 미래 도시화 규모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시의 역할 • 2차 세계지방정부총회를 통한 지방정부의 기여 인정
공유비전	• 도시권(모두를 위한 도시)을 보장하는 도시 • 모두에게 적절하고 동등한 기회와 권리를 부여하는 도시 • 우리가 바라는 도시의 모습 제시
원칙과 사명	• NUA 채택 원칙에 대한 결의 • NUA를 통한 도시 패러다임 전환 공약
행동지침	• 모든 국가와 도시가 채택해야 할 보편적 가이드라인 제정 • 각 국가의 상황, 역량, 관습을 고려한 이행 원칙 • 개도국과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한 관심 •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공동의 비전과 정치적 공약

새로운 도시의제를 위한 키토 이행계획

A.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전환적 사명 공약
- 사회적
- 경제적
- 환경적

B. 효과적인 이행
- 거버넌스
- 도시계획
- 이행수단

C. 후속조치 및 검토
- SDGs 점검 체계와 연계, 지방정부와 이해당사자와의 협력 등
- 71차 UN총회에서 UN-Habitat의 지위와 역할 확인 및 거버넌스 체계 개선 제안
- 2026년에 NUA 진행사항 점검 및 2036 해비타트4 개최 약속

이클레이 한국사무소, UN 해비타트3 배경 및 주요결과 발표자료 9

2.시대정신과 공간민주주의

이제는 시민이 앞장서서 공간을 통해 민주주의를 펼쳐가야 한다!





공간민주주의

- 누가
- 누구를 위해?
- 어떻게?

공간을 만드는가!

10

3.지방정부의 공간민주주의 추진 필요성

지방정부

UN 헤비타트 : 지속가능한 도시만들기 주체의 역할 변화

대한민국정부

지방정부 ?



통치 (Government)	협치 (Governance)	시민자치 (self-government)
국가의 책임	지방정부(도시)의 역할	시민 참여
(1992)	(2002)	(2016)

11

3.지방정부의 공간민주주의 추진 필요성

지방정부

지방자치법 : 자치사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다해야



3.지방정부의 공간민주주의 추진 필요성

지방정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38호, 2026. 6. 2., 일부개정]

-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
- 주민참여를 확대해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 발전을 추구하는 제도

권한·책임 배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합니다.

정책결정·집행 자율성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 관한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책임하에 집행하도록 합니다.

주민 참여 확대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해 정책결정·집행 과정의 소통과 자율성·책임성을 높입니다.

"우리 동네의 주인은 바로 우리입니다"

자치분권은 주민이 지역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작은 관심이 우리 지역을 바꿉니다 💙

지방자치의 본질 : 주민참여

✔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의 참여!

자치란 곧 당사자의 참여를 전제로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직·간접 참여로 운영되는 조직.
즉, 주민참여 없는 지방자치는 있을 수 없다!

민주주의가 모든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듯,
지방자치는 모든 지역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



13

3.지방정부의 공간민주주의 추진 필요성

지방정부



결정할 힘, 실행할 힘, 함께 만드는 힘



K 민주주의

14

4.지방정부의 실행 전략

주체성찾기

지방 地方 X ⇒ 지역 地域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서울지역관리청

지방자치단체 X ⇒ 지역정부

대구광역시 | 한국관광공사 | 영덕군 | 연천군 YEONCHEON | 안양시 | 광주시

횡성군 | 평창군 | 영월군 | 양구군 | 속초 | 화천군 | 진안군

충청남도관광협회 | 다른광역시관광협회 | 함양군 | 충주시 | 청주시 | 제천시 | 단양군

GNTO 경남관광재단 | 창원시 | 창양군 | 익산시 | 완주군 | 장흥군 | 고흥군

충청북도관광협회 | 태백시 | 영동군 | 울진군

15

4.지방정부의 실행 전략

협치틀

행정권력+전문가권력+시민권력 지역협치를 일상화해야



15

4.지방정부의 실행 전략

공간민주주의의 의제화

지역의 공간민주주의 실천의제 찾고 풀어가야





지역 공간민주주의 **헌장만들기**

공간민주주의 헌장 **조례만들기**

공간민주주의 헌장 **시민위원회만들기**

지역의 공간민주주의 **실천의제 찾기**

공간민주주의 **시범사업 펼치기**

17

4.지방정부의 실행 전략

사례

서울광장만들기 운동과 보행조례 제정

개요 (Overview)

"도시는자동차의것이아니라, 사람의것입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서울은 '자동차의 도시'였습니다. 숭례문에서 경복궁까지 횡단보도가 하나도 없던 시절, 사람은 육교와 지하도로 몰려나고 도로는 오직 자동차만을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도시연대는 1996년 '걷고 싶은 서울 만들기 운동'을 선언하며 도시를 바라보는 패러다임을 뒤집었습니다. 도로는 사적 이익(승용차)이 아닌 공공의 이익(보행과 대중교통)을 위해 재분배되어야 한다는 '**공공재로서의 도로**' 개념을 정립하고, 추상적인 구호였던 '보행권'을 법적인 권리와 구체적인 물리적 공간으로 실현해냈습니다.



차량 중심이던 서울일 광장, 1952년 (한국뉴스 사료사진)

세계 최초의 보행 조례 제정 (1996~1997)

보행 운동이 단순히 '인도를 넓혀달라'는 민원을 넘어, 도시를 계획하는 전략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단단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 **배경:** 우리는 반복적인 시위나 캠페인을 넘어, 운동의 성과를 시스템으로 안착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는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통해 제도를 바꾸는 '생장 기반 입법 운동'의 시도였습니다.
- **과정:** 1996년을 '보행권 회복의 해'로 선포하고, 서울시의회 및 전문가 집단과 치열한 논의를 거쳤습니다. 시민단체가 초안을 만들고 의회가 호응하는 협력적 모델을 통해, 1997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가 공포되었습니다.
- **성과와 의미:**
  - **세계 최초의 보행 조례:** 선언적 수준에 머물던 보행권을 지자체의 법규로 명문화하여 '사회적 권리'로 규정했습니다.
  - **정책의 감제성 확보:** 보행환경개선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도시계획 수립 시 보행권 불침투선으로 반영하도록 못 박았습니다. 이는 이후 중앙정부 차원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출처 :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https://www.dosi.or.kr/)

18

4.지방정부의 실행 전략

사례

서울특별시보행권확보와보행환경개선에관한기본조례

[시행 1997. 1. 15.] [서울특별시조례 제3376호, 1997. 1. 15., 제정]

서울특별시(보행정책과), 02-2133-2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행환경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행권"이라 함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라 함은 보행자의 보행과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물리적, 감각적, 정신적 측면과 이에 관련된 제도 등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을 말한다.
3. "보행약자"라 함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2.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행권확보·보행환경시설의 유지 관리·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자치구의 보행환경 개선시책 수립 및 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시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중앙정부보다 먼저 제도화**

- 법률은 2012년에 제정
- 보행권 규정

19

4.지방정부의 실행 전략

사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약칭: 보행안전법)

[시행 2012. 8. 23.] [법률 제11339호, 2012. 2. 22., 제정]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044-205-4219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이하 생략)
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 · 생태적 · 역사적 · 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3조(보행권의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복리 증진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진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장애,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 지역적 사정 등에 따라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보행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설치, 차량의 소통 등 보행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제도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과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제도 및 사업 등에 따른 편익보다 보행자의 안전을 우선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④ 안전한 보행환경이 적절히 조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행자에게 불리하게 책임을 부과하거나 법률을 적용 ·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20

4.지방정부의 실행 전략

조례제정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





시민(사람)



활동



땅과 시설
(공간)



21







고맙습니다



주제 발표 03

공간민주주의 12대 실천 의제

홍경구 |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 /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공간민주주의
12대 실천 의제

2026.08.27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 위원
단국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홍경구

SPATIAL DEMOCRACY **공간민주주의**

The 12 Agendas



01 공간주권

공간은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시민 모두의 것이며,
시민의 참여로 함께 만들어 간다.



공간은 특정 권력이나 자본의 소유물이 아니라 **시민 모두의 공동 자산으로**
모든 공간 정책과 개발 사업은 **시민 참여와 공개된 절차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시민이 공간 형성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





서울시 시민 도시아카데미

2014~2022년, 9회에 걸친 교육·토론을 통한 시민계획가 양성과 정책 참여 기반 강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7인의 도시 철학 콘서트









주요성과
- 2014~2022년 교육을 통해 시민 도시계획가 약 2,000여명 양성
- 시민 의견을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수립 과정과 연계
- 시민을 도시계획의 수혜자가 아닌 학습·토론·제안의 주체로 전환

출처: 환경일보, 시민도시아카데미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 재개발 (영국 런던)

주민이 공간을 직접 기획·개발·운영하며, 상업 수익을 공동체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모델







개요
- 추진 주체: 주민행동그룹, 코인스트리트 커뮤니티 빌더스, 비영리 사회적 기업 및 지역 주민
- 추진 기간: 1970년대 후반 ~ 현재
- 공간 범위: 영국 런던 템스강 남안 수변 지구 (약 13에이커)
- 실행 방식: 주민 도시계획안 수립, 비영리 사회적 기업 설립을 통한 토지 매입 및 수익 지역사회 재투자

출처: Coinstreet Oganization

02 관계성

공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보이지 않는 선을 잇는다.



공간은 **사람과 사람, 행위와 환경을 서로 잇게 하는 기반**으로
단절된 공간을 회복하고 공동체적 소통과 관계가 살아나는 **열린 구조를 지향한다.**





인사동 남인사마당과 북인사마당

전통 공연 및 행사, 시민 휴식이 한곳에서 일어나는 인사동 커뮤니티의 관문



출처: 트립어드바이저, Shinarchitects

하이라인 파크 (미국 뉴욕)

산업유산을 산책·휴식·문화 활동이 공존하는 선형의 시민 공공공간으로 전환



개요
- 추진 주체: 시민단체 'Friends of the High Line' & 뉴욕시
- 추진 기간: 1999년 ~ 2014년
- 공간 범위: 미국 뉴욕 맨해튼 서부 폐고가 철도 구간 (길이 약 2.33km)
- 실행 방식: 철거 위기 고가철도를 시민 보존 운동과 민관 협력을 통해 보행 녹지축으로 리모델링

출처: Conde Nast Traveler, ArchitectureAU, Wikipedia, New York City Travel Tips

03 사적공간의 사회적 책임

심지어 사적 공간도 사회적 소통 체계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



사적 공간 또한 공동체와 관계 속에 존재하므로
사유재산권을 존중하되 공공성과 개방성을 함께 고려하며,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공간문화를 확산한다.**





판교테크노밸리 야외광장과 공중공공보행통로

사유 공간의 개방 및 보행로 구축을 통해 입체적 도심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







출처: Heerim Architects, 한우물중공업(주)

아모레퍼시픽 본사 아트리움

민간 오피스의 저층부를 아트리움을 시민 문화공간으로 미술관·도서관 등 개방



개요
- 추진 주체: 아모레퍼시픽·데이비드 치퍼필드 아키텍츠
- 추진 기간: 2010~2017년
- 공간 범위: 본사 지하 1층~지상 3층
- 실행 방식: 저층부 아트리움·미술관 문화시설 시민 개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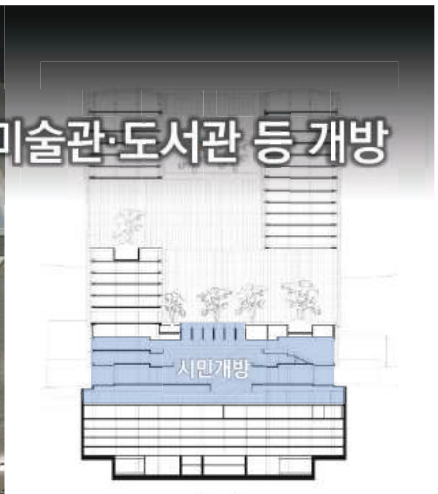



출처: 아모레퍼시픽 스토리, 인베스트조선, YTN



04 시민숙의

공간은 특정 권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 공동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쓰임새에 시민의 숙의와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공간의 개발·이용·보전·변화에 관한 결정은
정치·자본 등 특정 이해관계에 의해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의사결정은 시민 참여와 공개된 숙의를 바탕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수원시 도시정책 시민계획단

시민·청소년이 도시의 문제와 자원을 발굴하고 방향 제안, 생활권계획에 반영



주요성과

- 일반 시민이 도시기본계획의 비전과 방향성을 직접 입안한 행정 협치 사례
- 대규모 시민 원탁토론을 통해 토지 이용, 공공공간, 교통 등 핵심 도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
- 관 주도 도시개발을 시민 숙의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고, 도출된 안을 공식 도시계획에 반영

출처: 수원시 인터넷신문

성미산마을 공동체

주민들의 출자로 땅과 건물을 매입, 다양한 공동체 협동조합 기획 및 운영


마을극장


공동체주택


성미산 대안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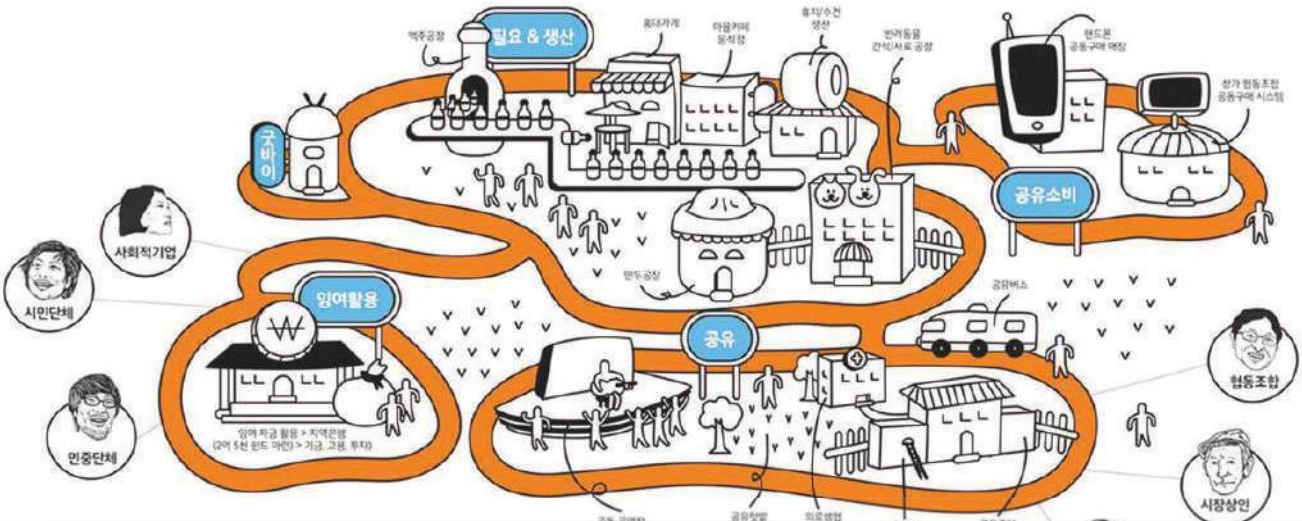

주요성과

- 성미산 개발 위기에 맞서 주민이 직접 마을 공간의 용도와 미래를 결정
- 공동육아, 마을극장, 협동조합 등 자립형 공유 공간을 직접 조성·운영
- 일회성 참여에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이웃 커뮤니티와 마을 자치 구현

출처: 마을공동체, 성미산 마을

05 지역성

지역 특색과 기억을 다원화하여 참된 지역성을 창출한다.



공간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 생활의 흔적을 담아내야 하며
획일적인 개발과 상업화를 넘어
지역에 담긴 다양한 이야기와 특색이 살아 있도록 조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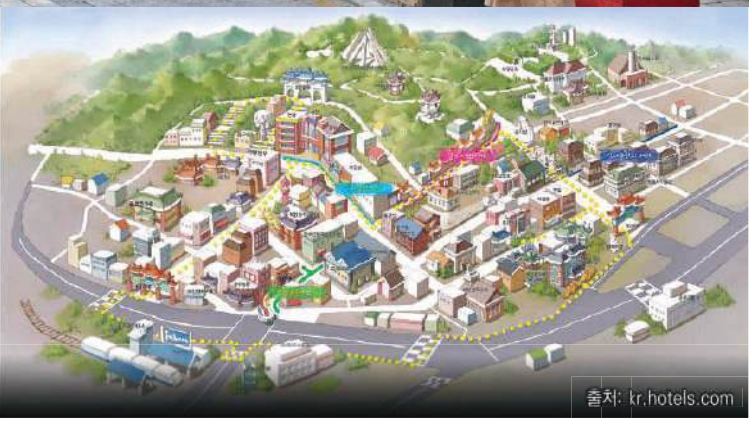

판교 테크노밸리

첨단산업단지의 지역성을 반영한 3기신도시 지원시설용지의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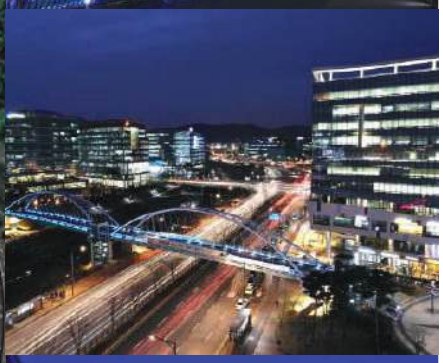



출처: 판교테크노밸리

니넨자카, 산넨자카 거리 (일본 교토)

전통 목조 건축과 엄격한 경관 규제로 고유의 역사적 정체성을 보존한 전통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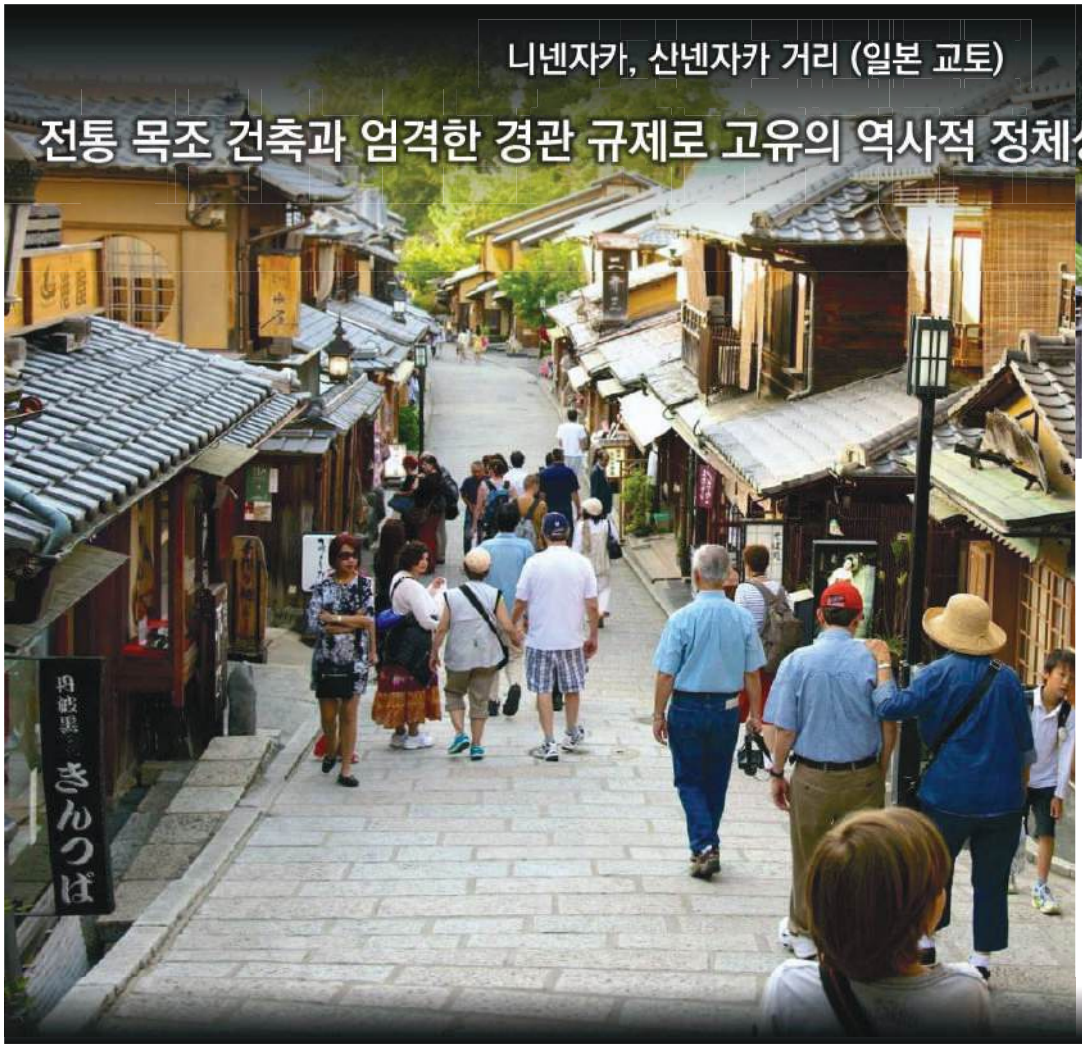





출처: 위스피디아, kyoto travel, GetYourGuide



덤보 & 윌리엄스버그 베드포드 에비뉴 (미국 브루클린)

쇠퇴한 붉은 벽돌 창고와 공장 부지를 예술가 스튜디오, 마켓, 문화공간으로 재활용

출처: Britannica, Letters From Liz., trip adviser, Michael Ames

06 걷고싶은도시

지역 특색과 기억을 다원화하여 참된 지역성을 창출한다.



시민이 걷고 머물며 공간의 **즐거움과 감동을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기능 중심의 공간을 넘어 **다채로우면서도 조화로운 도시 풍경을 추구**한다.




전주 첫마중길
차로 다이어트를 통해 도로 중앙에 보행광장과 가로숲을 조성
출처: YTN


대구 근대골목
근대건축·고택 등 흩어진 역사문화거점을 1.64㎞ 보행축으로 연결


출처: 영남일보, Doopedia

서울로7017

노후 고가도로를 철거하지 않고 보행전용길과 공중정원으로 재활용







출처: VMSPACE, 아시아투데, 연합뉴스

덴버 16번가 몰 (미국 콜로라도)

도로 1.25마일 구간의 차량을 통제하여 보행자 전용 프롬나드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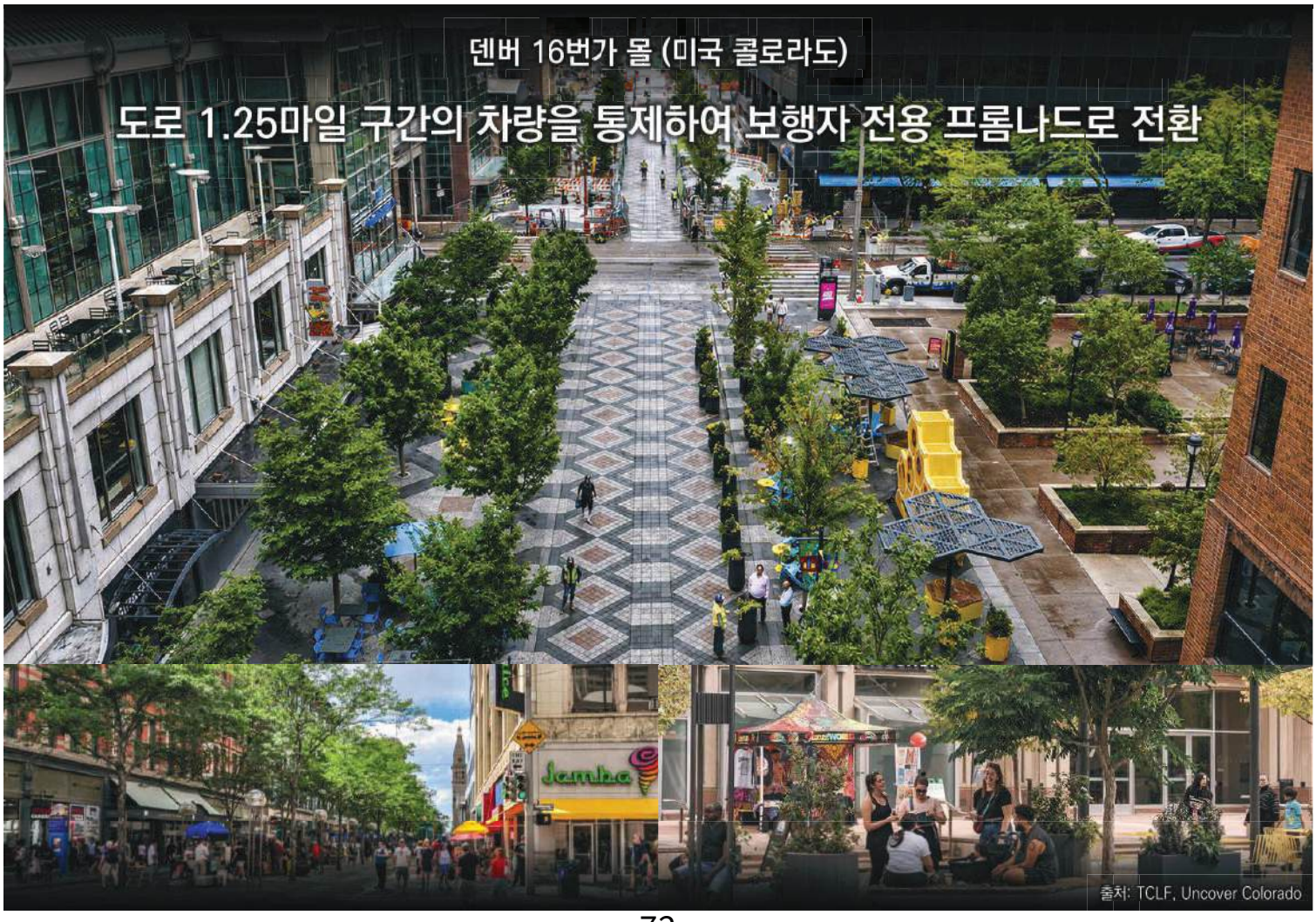

출처: TCLF, Uncover Colorado



07 다원성과 포용성

다양한 세계관과 문화가 공존하는 포용적 공간을 조성한다.



공간은 **다원적 삶의 방식과 문화, 가치관이 공존하는 장**으로
모든 세대와 사회적 소수자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포용적 환경을 조성**한다.



서울 이태원

외국인 거주자, 해외 관광객과 한국인이 함께 이용하는 대표적인 국제문화지역



출처: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중국계를 중심으로 다국적의 이주민 문화와 음식이 공존하는 다문화 생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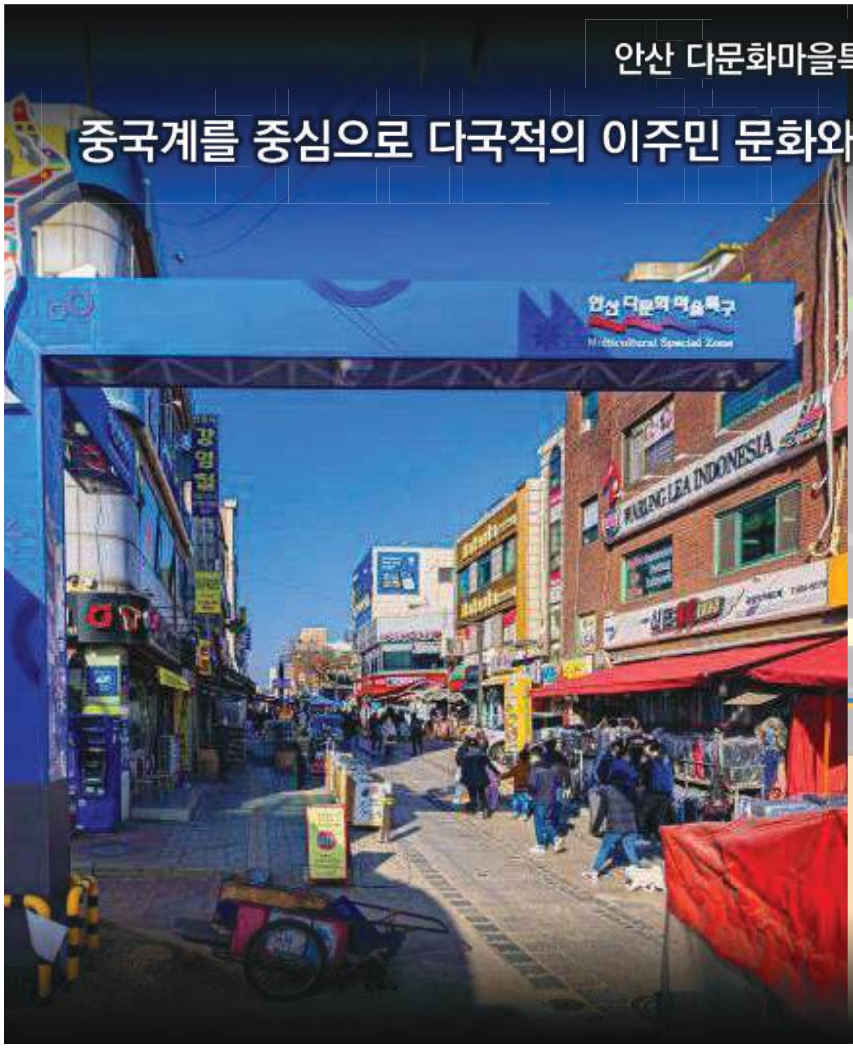



출처: 여행은 바로처럼, 안산시청

서울 성수동

기존 제조업과 새로운 문화·창조산업이 공존하며 다양한 팝업이 있는 도시 형성









출처: 내 손안에 서울, 리맥스코리아, 스위트스팟, 어패럴뉴스

웨스트-크라위스카데 (네덜란드 로테르담)

다양한 이주민 문화와 상권이 어우러지며 다문화적 일상이 공존하는 상업거리



개요
- 추진 주체: 로테르담 시, 지역 상인회와 주민·이주민
- 추진 기간: 2009년~2017년
- 대상 지역: 로테르담 웨스트 크라위스카데 일대
- 주요 내용: 이주민 상점과 음식·문화의 다양성을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자산으로 활용







출처: harbour010city, .Rotterdamcentrum, dehavenloods, wereldmuseum

08 일상의 여유

누구나 쉽게 머물고 쉬며 소통할 수 있는 일상의 휴식 공간을 확충한다.



공간은 이동과 소비의 장소를 넘어
머무름과 만남, 회복이 이루어지는 장으로
휴식과 교류를 위해서 광장·골목·공원 등
일상 속에서 활착가능한 공간을 확대한다.











09

시간과 기억의 축적

공간은 시간의 켜와 기억이 쌓일수록 매력적 자산이 된다.



공간은 철거와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축적되는 자산으로
기억과 경험,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공간을 **보존하고 계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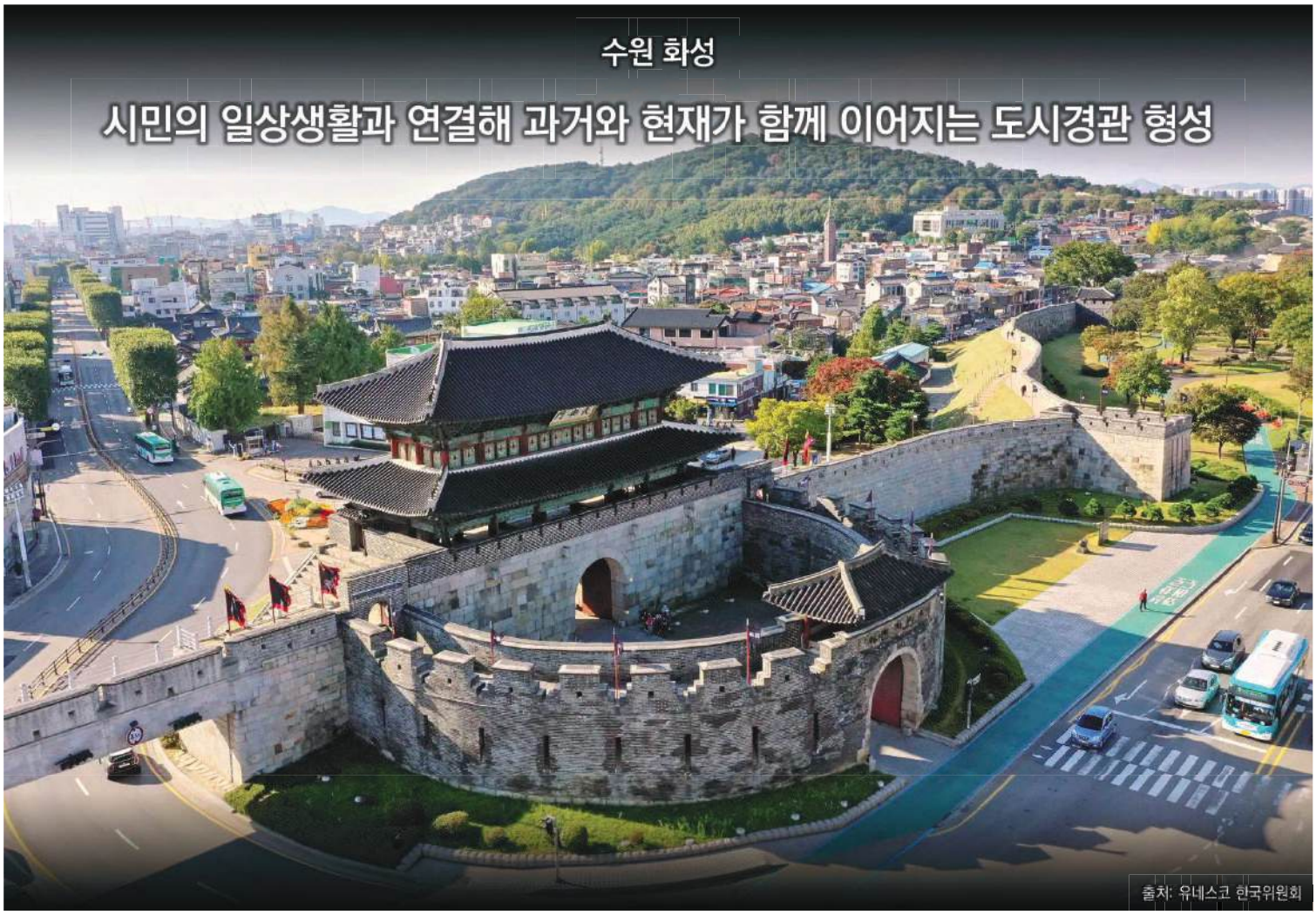
수원 화성
시민의 일상생활과 연결해 과거와 현재가 함께 이어지는 도시경관 형성
출처: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서울 북촌한옥마을
전통 한옥과 골목 사이에 갤러리·문화공간·상업시설이 함께 자리한 역사생활권
출처: 인포매스틱뷰

소호 그린스트리트 (미국 뉴욕)

19세기 주철건축을 보존하며 현대 상업·문화가 공존하는 소호의 대표 거리







주요 내용

- 19세기 산업·상업 중심지로 형성되며 상점과 공장이 밀집한 거리로 발전
- 산업 쇠퇴 이후 유휴공간에 예술가들이 입주하며 작업실·갤러리 중심 예술지구로 재생
- 이후 상업·문화 기능이 더해졌지만 기존 건축물을 보존해 역사적 경관과 도시 공존

출처: Dreamstime, thestorefront, University of Chicago Magazine ,loving-newyork

시티 오브 런던 (영국 런던)

역사 건축과 현대 초고층이 공존하며 도시의 시간적 층위를 보여주는 도심





출처: architectsjournal, 호텔스검바인, 브런치

10 지속가능성

공간은 다음 세대로부터 빌려 쓰는 것이며
미래 세대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공간정책은 **미래세대와 생태환경에 대한 책임**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현재의 필요를 넘어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다.



신안군 햇빛연금

태양광 재생에너지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해 지역소득을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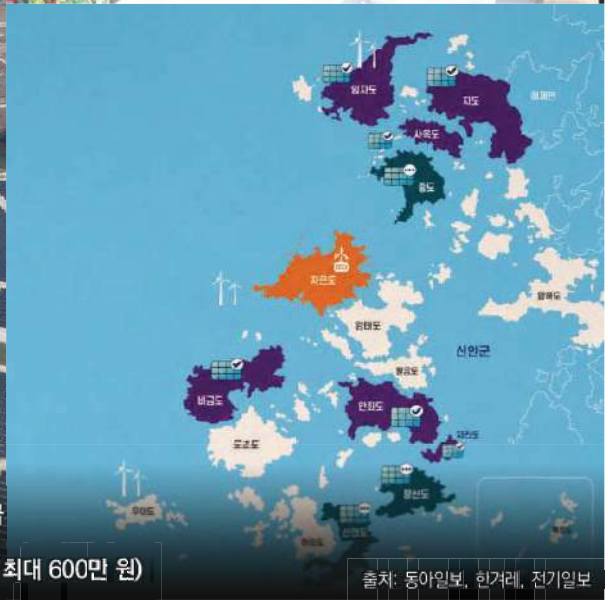

개요
- 추진 주체: 신안군 지역 주민협동조합 태양광 발전사업자
- 추진 기간: 2018년 10월 5일 관련 조례 제정, 2021년 4월 안좌·자라도 주민에게 첫 연금 지급
- 대상 지역: 전남 신안군 내 6개 섬(안좌, 자라, 사옥, 임자, 자은, 지도)
- 주요 내용: 태양광 발전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배당(1인당 연간 최대 600만 원)

출처: 동아일보, 한겨레, 전기일보

순천만습지·순천만국가정원

738㏊ 습지와 철새 생태계를 보존하여 지역브랜드 및 관광경제와 연계





주요성과
- 철새 핵심 먹이터의 전봇대 282개 철거 및 738㏊ 생태보전지역 지정
- 순천만습지와 국가정원을 연계한 생태보전·도시관리체계 구축
- 습지 보전을 관광·지역브랜드로 확장한 생태경제의 선순환 실현



출처: 트립전드, 서울Pn – 서울신문, 남도방송

함마르비 허스타드 (스웨덴 스톡홀름)

에너지 순환시스템을 구축하여 오염된 항만·산업지역을 친환경 복합주거지로 재생





개요
- 추진 주체: 스톡홀름시, 민간 개발사업자, 에너지·상하수도 관련 기관
- 추진 기간: 1996년 ~ 2017년
- 대상 지역: 스톡홀름 남동부 함마르비 호수 일대
- 주요 내용: 폐기물 지역난방과 하수 바이오가스 활용을 통한 저탄소 생활 실현, 수변복합주거지로 재생



출처: Stockholm växer, Hammarby sjostad, Copenhagen Water

11 정주성

모든 세대와 계층이 함께 살아가며 미래를 이어갈 수 있는
입체적인 공간만이 지속 가능하다.



공간은 누구나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 지속 가능하며
주거·교통·안전 등 생활의 기본 조건을 우선 보장하고
살 수 있으며 살고 싶은 정주환경을 만든다.





출처: A1타임스, 비타민 저전골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대중교통 중심 콤팩트시티 (일본 도야마)

대중교통 축을 중심으로 생활거점을 연결한 압축도시를 구현해 고령화·인구감소에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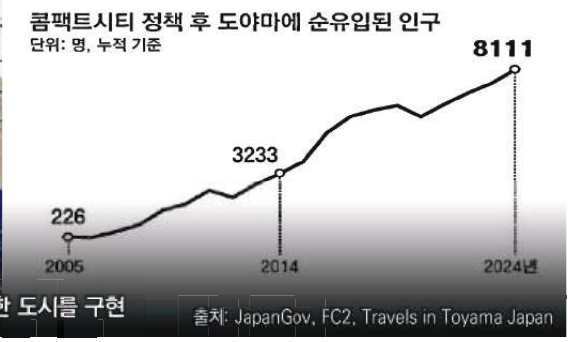

개요
- 추진 주체: 도야마 시, 대중교통 및 민간 개발사업자, 시민
- 추진 기간: 2004년 ~ 현재
- 대상 지역: 도야마 시 전역 대상
- 주요 내용: LRT 등 대중교통을 개선해 차 없이도 생활하고 도시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

출처: JapanGov, FC2, Travels in Toyama Japan

캄풍 애드미럴티 (싱가포르)

고령자주택과 의료·돌봄·보육·상업·교통시설을 수직으로 결합, 도심형 정주모델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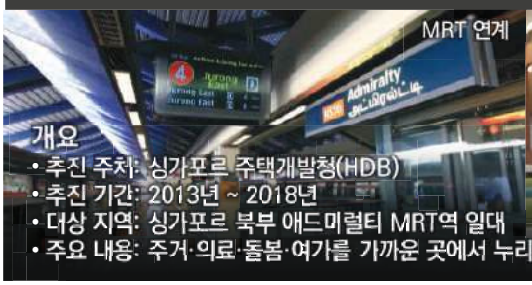





개요
- 추진 주체: 싱가포르 주택개발청(HDB)
- 추진 기간: 2013년 ~ 2018년
- 대상 지역: 싱가포르 북부 애드미럴티 MRT역 일대
- 주요 내용: 주거·의료·돌봄·여가를 가까운 곳에서 누리며 활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조성

출처: Keppie Design, makannorth, Land Transport Guru, NTUC Health

12 삶의 질과 행복

공간은 삶을 지탱하는 기반이며, 시민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이다.



공간은 **시민의 행복과 공동체의 안녕을 뒷받침하는 기반**으로
공간정책은 **삶의 질 향상과 일상의 풍요를 목표로 추진**되어야 한다.





서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세종대로 서측에 광장을 통합해 보행·휴식과 시민을 우선하는 공간으로 재구성



출처: 시크릿 서울, 서울신문

서울 서울숲

도심의 산업·유휴공간을 대규모 녹지와 문화·휴식공간으로 전환



출처: 내 손안에 서울, 대한민국 구석구석

킹스크로스 역세권 개발 (영국 런던)

쇠퇴한 철도·산업부지를 보행 중심 생활지구로 재생해 시민의 삶의 질과 도시활력 증진





개요
- 추진 주체: 킹스크로스 센트럴 개발파트너십
- 추진 기간: 2001년 ~ 현재
- 대상 지역: 런던 킹스크로스·세인트판크라스역 북측 철도 화물·산업 유휴부지
- 주요 내용: 기존 건축물을 재생·활용하고, 전체 부지의 40% 이상을 열린 공간으로 확보하며 보행 중심 도시 조성

출처: 위키피디아, Seventa Events, londonist

사우스뱅크 파크 (호주 브리즈번)

1988 세계엑스포 개최지를 시민 중심의 생활공간으로 환원해 삶의 질과 행복 촉진



개요
- 추진 주체: 퀸즈랜드 주, 사우스뱅크 코퍼레이션
- 추진 기간: 1989년 ~ 현재
- 대상 지역: 호주 브리즈번강 남측 사우스뱅크 일대
- 주요 내용: 엑스포 종료 후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공공공간으로 확보하고, 수변공간 전체를 공원 중심으로 재편

출처: Queensland

대한민국 공간정책의 새로운 시작

공간민주주의

— 「공간민주주의 헌장(안)」 제안 국회토론회 —

주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 한준호 국회의원 | 염태영 국회의원 대통령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 Presidential Commission on Architecture Policy 도시연대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 인천연대 마을

후원 세종특별자치시, 은평구청, 강서구청, 강북구청, 수원특례시·고양특례시·부천시,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가협회
새로운문화를실천하는건축사협의회, 한국여성건축가협회, 한국도시설계학회,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한국조경학회